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5567       |
| 의 퇴 인 | 엄태영 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 11. 20. |
| 추계번호  | 24F5162      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 
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 
 법인세는 2026년 80.7억원, 2028년 80.7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  
 까지 3년간 총 242.0억원(연평균 80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누적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<br>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<br>(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) | -80.7 | -80.7 | -80.7 | -242.0 | -80.7 |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| 안 제12조의3<br>(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<br>세액공제)   | 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<br>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<br>- (적용기한) 2024.12.31. → 2027.12.31.           |    |
| 2  | 안 제12조의4<br>(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<br>대한 세액공제) | 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내국법인에<br>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<br>- (적용기한) 2024.12.31. → 2027.12.31. |   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1  | 안 제12조의3(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)   | ○    |    |
| 2  | 안 제12조의4(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) | ○    |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 기준에 따라 집계함
  - 2025~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6~2028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~2028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향후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 - 향후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과 이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   - －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47억원에서 2024년(잠정) 18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연도별 증감률 추이가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음

## 3. 상세 추계내역

### 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·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(인수)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
  - 동 제도는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
  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, 주식·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%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
    - 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R&D 비용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% 이상인 중소기업, 기타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한 중소기업 등

- 기술가치 금액: 다음 ①, 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
  - ① (기술평가기관이 합병등기 전후 3개월내에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특허권 등 평가액)과 (양도가액 -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) 중 낮은 금액
  - ② (양도가액 -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× 120%)
- ※ 주식·지분인수시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기술가치 금액 산정
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(감면실적)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의 최근 5년 (2020~2024년)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47억원에서 2024년(잠정) 18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연도별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2] 기술혁신형 합병·취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(잠정) | 연평균<br>(‘20~’24년)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공제실적 | 47   | 45   | 53   | 76   | 182      | 80.7              |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 공제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 - 향후 법인세 공제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인 80.7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80.7억원, 2028년 80.7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42.0억원(연평균 80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누적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기술혁신형 합병·주식취득에 대한<br>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<br>(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) | -80.7 | -80.7 | -80.7 | -242.0 | -80.7 |

## 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 V. 작성자

□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세제분석2과  | 박정환 | 백경엽 |

□ 대표연락처
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박정환 | 02-6788-4835 | jhpark83@assembly.go.kr |